

2022 하나투어 상품판매대행계약서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TK트래블' (이하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있어, 고객과의 여행상품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및 (주)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와 '여행사'간의 업무와 책임,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이다.
- ② 당사자 일방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 일 전까지 계약의 종료, 연장, 변경 등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 년간 연장된다. 단, 이러한 자동 연장은 최대 2 회로 한정한다.

제 3 조 [계약의 내용]

- ① '여행사'가 '하나투어'를 대행하여 고객에게 '하나투어'로부터 공급받은 여행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여행상품상담 및 계약의 체결, 약관설명 및 교부, 상품대금의 입금처리 등 '여행사'의 의무사항을 정한다.
- ② '하나투어'와 '여행사'의 상품판매대행수수료의 지급, 고객정보의 보호 및 수집절차 등을 정한다.
- ③ 기타 '하나투어'와 '여행사'의 업무와 의무위반에 따른 효과를 정한다

제 4 조 [판매 대행 상품]

'여행사'가 '하나투어'로부터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투어'의 국내·외 항공권 및 기획 상품(패키지 상품, 허니문 포함), 희망 기획 여행상품 (자유여행, 에어텔, 배낭여행, 단체맞춤여행 포함) 또는 여행 단품 상품(입장권, 패스, 현지투어 포함), 국내·외 숙박 및 그라운드
2. '여행사'가 '하나투어'에게 요청하여 '하나투어'가 기획, 공급하는 여행상품
3. 기타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여행 관련 용품 등
4. '하나투어' 자회사의 상품 중 '하나투어'가 공급하는 여행상품 등

제 5 조 [업무와 책임]

- ① '하나투어'의 업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하나투어'는 여행상품을 개발, 기획하여 '여행사'에게 공급하며, 여행상품의 현지 행사를 주관한다.
2. '하나투어'는 공급하는 여행상품의 품질 관리와 판매 기법의 개발 등 판매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3. '하나투어'는 자신이 공급한 여행상품에 대하여 '여행사'의 대 고객 판매 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언하며, '여행사'의 요청 시 '여행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4. '하나투어'는 여행상품 및 행사에 필요한 '하나투어'의 자체 제작물이나 '하나투어'에 저작(인접)권이 있는 정보를 '여행사'에게 제공하고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하나투어'는 'Fair Price 정책'을 만들고 '여행사'에게 고지한다. 'Fair Price 정책'이란 어느 판매처를 통하더라도 하나투어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며, 상품에 대한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가격정찰제 정책이며, 정책의 내용은 예약시스템, 투게더스 공지 또는 공식 문서를 통하여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본 계약에서 예약시스템이라 함은 '하나투어'가 '여행사'에게 제공하는 예약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차세대플랫폼 등 기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도 동일하다)

② '여행사'의 업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여행상품 판매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에 대하여 상품 판매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2.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판매 대리점으로서 고객에게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하나투어'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한다.

3. '여행사'가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건 계약 외에 해당 여행상품의 세부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원활한 대 고객 여행서비스(여행자보험, 샌딩, 항공, 현지행사, 비자) 진행을 위하여 여행상품 구매 고객의 정보를 '하나투어'에 제공한다.

5.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Fair Price 정책'을 준수하며, '하나투어'가 '예약시스템'을 통해 고지한 'Fair Price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함에 동의한다. 본 정책에 따라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상품을 할인 판매 할 수 없으며, 할인으로 인한 다른 판매 채널과의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Fair Price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투어' 승인 하에 권장 가격에 대하여 수수료 한도 내에서 할인한 가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

6.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 브랜드몰 계약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의 간판, 홍보물, 명함, 사무서식, 홈페이지 등을 비롯한 어떠한 매체에도 '하나투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에 따라 '하나투어'로부터 제공받은 여행상품의 브로슈어 등의 경우 당해 상품 판매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예약시스템 내 개인정보처리계정의 발급

가. 예약시스템 내 개인정보처리계정발급 및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여행사 임직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전 “가”목의 동의서를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동의서 체결 이전에는 거래가 개시되지 않고, 거래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의서 체결 전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③ '하나투어'와 '여행사'는 위에 열거한 업무를 포함하여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여행상품의 예약 및 거래 조건]

① 여행상품의 예약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을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예약시스템 및 메신저(하나톡)를 사용하여 직접 상품 예약,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이 ‘하나투어’에 납부된 건에 한하여 예약으로 정의한다. 다만, 예약이 출발의 확정, 여행 인솔자의 동행, 일정의 확정 등 여행 조건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여행상품의 거래조건

1. 국내·해외 기획 상품(패키지 상품, 허니문 포함), 희망 기획 여행상품 (자유여행, 에어텔, 배낭여행, 단체맞춤여행 포함)

상기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거한 ‘하나투어’여행약관(별첨)에 의한다.

2. 국내·해외 항공권

상기 상품은 해당 항공사별 규정에 의한다.

3. 국내·해외 호텔

상기 상품의 예약 관리는 해당 호텔 공급자 별 예약 절차에 의한다.

4. 그라운드 서비스(랜드)

그라운드 서비스만을 ‘여행사’가 판매할 경우, ‘하나투어’는 확정서를 발행하여 예약 조건 및 서비스 내역을 명시하여 발행된 확정서에 명기된 서비스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참고] 확정서는 고객의 예약 내용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로 고객에게 자신의 예약 내용을 확인 시킨다. 또한 ‘하나투어’의 서비스 이행에 대한 판단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5. 비판매용 상품(AD 투어, 스터디 투어, 여행사 임직원 전용상품, 프로모션 물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6. 상기에 명기 되지 않은 기타상품은 해당 공급자의 약관에 의한다. (예: 크루즈, 각종 패스, 입장권, 렌터카 등)

제7조 [여행계약 체결 및 여행사의 의무]

① 여행계약의 체결

1. 고객이 ‘하나투어’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고 ‘하나투어’가 소정절차에 따라 신청을 확인한 후 고객에게 확정, 고지 함으로써 ‘하나투어’와 고객 사이에 여행계약이 성립된다.

2.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표준약관(별첨 1),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한다.

② ‘여행사’의 의무

1.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관광진흥법과 하나투어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여행일정표, 여행약관, 여행계약서, 해외안전정보를 전자우편, 팩스, 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본 조 제 1 항에 따라 여행일정표, 여행약관, 여행계약서 등을 교부할 경우 관광진흥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거 여행상품에 대한 내용 및 약관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일 경우 '여행사'는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특별약관의 내용 및 해당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를 것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4. '여행사'가 위의 3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사'는 '하나투어'에게 특별약관에 따라 명시, 설명을 받지 못한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취소수수료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가 위 조항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여행사'는 고객의 여권정보 및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바르게 입력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집 및 파기 처분해야 한다.
6. '여행사'는 본 계약의 동질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하나투어'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호 변경
 -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
 - 폐업, 업종변경, 회사합병 등의 결정
 - 지점 사업장 또는 동일한 대표자의 다른 동종(여행업) 사업장 개시
 -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사업자대표자가 상이할 경우
7.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하나투어 여행상품권'과 유사한 물품교환증, 상환권 등 일체의 유사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
8.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항공권을 판매 시 항공사별 규정된 Malpractice 를 준수하고, Malpractice 행위로 하나투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손해액 및 브랜드 손해액, 영업손실액 등 총체적인 손해액을 배상한다.
9. '여행사'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허가 받지 아니한 곳에서는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10. 여행사'는 주소 또는 영업장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하나투어'에게 그 변경된 주소 또는 영업장을 통지해야 한다.
11. '여행사'는 상품판매 시 지체없이 예약시스템에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제8조 [대금 결제]

① 상품 대금의 결제 방법

1. 현금 결제

'여행사'는 고객별로 부여된 '하나투어' 가상계좌 또는 '하나투어'의 공식계좌를 통해 상품속성의 여행대금은 상품 출발 7 일전 (영업일 기준)까지, 항공속성은 구매확정 또는 발권 전까지 대금의 전액을 입금한다. 이는 모두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2. 카드 결제

고객이 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하나투어’ 홈페이지(www.hanatour.com) 내 예약확인/결제 메뉴를 통하여 직접 결제하거나, ‘하나투어’ARS(1577-0015)시스템을 통해 직접 결제하도록 한다. 또한 예약 고객이 아닌 제 3 자의 카드를 사용한 결제의 경우, 해당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안내를 고객에게 고지하며, 증빙서류를 ‘하나투어’에 제출 해야 한다.

3. 상품권 결제

항공속성은 국민관광상품권 및 하나투어상품권 결제가 불가하다.

4. 본 항 제 1 호 내지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협의 하에 고객의 여행경비를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투어’는 인보이스 발송 방식으로 ‘여행사’에게 여행경비를 청구하며 ‘여행사’는 ‘하나투어’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후 출발일 기준 7 일전 (영업일 기준)까지 고객의 여행경비를 ‘하나투어’ 공식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 ‘하나투어’는 ‘여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여행대금이 ‘하나투어’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나투어’를 면책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하나투어’는 아래 각 목의 사정으로 먼저 피해 당사자에게 민사상 배상을 한 경우 ‘여행사’에게 배상 비용 및 지연이자 등을 구상하거나 ‘여행사’가 가입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하나투어’ 명의의 가상계좌나 ‘하나투어’의 공식계좌가 아닌 제 3 자의 계좌(여행사명의 계좌, 여행사 임직원의 계좌 등)를 전달하여 고객이 여행대금을 그 제 3 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발생한 사고

나. ‘하나투어’와 합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여행사’ 및 그 임직원이 여행대금을 편취하여 발생한 사고

다. 기타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금전사고

② 취소료 및 위약금

‘하나투어’의 기획상품 및 ‘하나투어’가 요청 받은 희망 기획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료 및 위약금은 ‘하나투어’의 국외, 국내 여행약관에 근거하되, 항공권, 호텔, 렌터카에 대한 취소료 및 위약금은 해당 공급자의 약관에 의한다.

③ ‘여행사’의 의무

1. ‘여행사’는 모든 여행상품의 대금결제는 본 계약 제 6 조 제 2 항 1, 4 호의 경우 상품 출발일 7 일전 (영업일 기준)에, 제 6 조 제 2 항 2, 3 호의 경우 항공권 또는 바우처의 인수 전에 입금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본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해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상품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전까지 ‘하나투어’의 공식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을 해당상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여행경비는 고객이 여행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지불할 목적으로 결제한 경비를 말한다.)

3. '여행사'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 3 자의 여행경비를 결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 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대금 지급보류 및 취소 등의 문제 발생시 '여행사'는 '하나투어'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고객의 여행계약해지로 인하여 취소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고객에게 '하나투어'에 입금하도록 한다. '여행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 한 경우 '하나투어'는 '여행사'에 해당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행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여행사'는 고객의 여행경비를 '여행사 및 '여행사' 소속 직원 명의의 카드 또는 여행 고객이 아닌 제 3 자의 카드로 대납하여서는 안된다. (단, 제 3 자의 카드 결제 시 카드소유주 본인에게 제 3 자 카드활용 동의서 및 결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6. '하나투어'가 정한 상품대금지급 기한까지 하나투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는 상품대금을 '여행사'에서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고객이 입금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고객이 '하나투어' 또는 '여행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판매대행수수료]

- ① 하나투어가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판매대행수수료는 각 상품 정하는 상품가(상품별로 표기된 총 상품가격에서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기본상품가격) 수수료 및 '여행사'의 역량과 실적 등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를 합하며 3%~12%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② 기타 상품(항공, 숙박, 개별 단품 상품이나 여행사 연합상품, 특가상품, 이세이브팩 등)의 경우 수수료율은 기본 수수료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상품 규정을 따르거나 별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 ③ 희망 기획 여행 상품 등 고객의 희망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의 수수료율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④ 희망 기획 여행 상품 중 단체맞춤여행의 지급수수료는 하나투어와 고객이 체결한 여행경비총액 - 수탁경비 - 하나투어 상품마진 - 하나투어 상품마진(VAT)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VAT포함)를 산정하며, 상품 마진은 하나투어의 정책에 따른다.
- ⑤ '하나투어'와 '여행사'가 추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별도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계약서 상의 수수료율을 지급한다.
- ⑥ 고객 희망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항공좌석 승급, 호텔 변경 등)으로 기존 상품보다 금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상품에 따른 판매대행수수료만 지급한다.
- ⑦ 본 계약 제 5조 제 2항 제 5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행사'가 수수료 한도 내에서 할인한 가액에 대해서는 '하나투어'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⑧ 고객이 여행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취소된 예약은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10조 [고객 정보의 보호 및 수집 절차]

- ①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정보를 획득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고, 여행의 진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는 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 및 여행 계약(‘하나투어’와 고객 간)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다.

제 11조 [보증보험의 가입]

- ① ‘여행사’는 정산 상 사고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국외 또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여행 보증금 예치(일반여행업 5 천만원, 국외 여행업 3 천만원) 또는 영업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공제 영업 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2. 본 계약 제 8 조 제 3 항 1 호에 따라 ‘여행사’가 고객의 여행경비를 직접 수령할 경우, ‘하나투어’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요청이 있는 즉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 원본을 ‘하나투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여행대금 전액이다.)
 3. ‘여행사’는 ‘하나투어’가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결과에 따라 ‘하나투어’가 제시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을 가입하여야 한다. 최초 계약 및 재계약시 또는 계약기간 중 대표자 변경 발생 시, 추가 신용조회를 진행하며, ‘여행사’가 신용조회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하나투어’가 정한 영업보증금에 대한 공제기간 1 년 기준 이행(지급)보증보험가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지급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해야 한다.
 4. 학생 단체나 대형 단체 또는 ‘하나투어’ 판단에 의해 예약 건 별로 행사 진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해당 예약 건의 판매 금액에 따른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및 효과]

- ① ‘하나투어’는 ‘여행사’에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할 때

2. '여행사'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국세채납처분 등을 받거나 파산, 회사정리, 특별청산, 회생절차 등의 신청을 했을 때
3. '여행사'의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상품 대금 등의 지불이 곤란할 때
4. '여행사'가 본 계약 제 10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하나투어'로부터 제공, 위탁 받은 고객정보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서 중 안정성확보조치 기준을 "2(이)회" 이상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서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2(이)회"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6.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예약시스템 및 메신저(하나톡)를 6 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매출이 6 개월 이내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7.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요청 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허위 접수한 경우
8. '여행사' 임직원이 여행자로 위장하여 예약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 또는 '여행사' 임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예약시스템에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9. '여행사' 또는 '여행사의'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피고용인이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령위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10. '여행사'와 '하나투어' 양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계약 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에게 영업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 성추행(희롱),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상기 1 항을 제외하고 '여행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투어'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기간 시정을 최고해도 '여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투어'는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하나투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연체하였을 때
2. '여행사'가 '하나투어'의 상표(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여행사'의 사업장 및 온라인, 모바일, SNS 상 등에 노출하였을 때
3. '여행사'가 '하나투어'의 상표(서비스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하였을 때
4. '여행사'가 '하나투어'의 상품 판매 및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컴플레인 등이 발생하였을 때
5. '여행사'가 '하나투어'와 유사한 상호(예를 들어 '하나투어' 또는 '하나 XX 투어' 등이 포함된 상호를 여행사 상호명에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하였을 때
6. 판매용이 아닌 상품(AD 투어, 스터디 투어, 프로모션 물품, 대리점직원 전용 상품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하나투어'가 제공하지 않는 상품을 '하나투어'의 상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7. '하나투어'의 상품이 아닌 상품을 '하나투어'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한 경우
8. '하나투어' 브랜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위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나투어'와 '여행사'의 거래는 중단되며, '여행사'는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해 '하나투어'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조 [양도금지와 비밀 유지]

- ①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여행사'는 매뉴얼 및 기타 '하나투어'로부터 대여 또는 제공받은 문서, 도면, 기타 도서를 엄중히 관리하고 '하나투어'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를 복사하고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 ③ '여행사'는 '본 계약' 및 경영상 취득한 '하나투어'의 영업에 관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 [손해배상]

- ① '여행사'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하나투어'에게 발생하는 클레임, 소송, 각종 불만사항 및 아래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하나투어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하나투어'는 '여행사'가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및 '여행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1. '여행사'또는 '여행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 등이 본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2. '여행사'또는 '여행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 등의 의도적이거나 부주의 또는 태만에 따라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3. '하나투어'의 상품이 아닌 상품을 '하나투어'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한 경우
 4. '하나투어'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여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5. '여행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교육과 내부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고객정보의 임의유출이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하나투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진다. 기타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하나투어'와 '여행사'가 추가 체결하는 '개인정보보호특약서'에 의한다.
- ② 제 3 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대금 지급보류 및 취소 등의 문제 발생시 '여행사'는 '하나투어'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가 신용카드 사용권한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자는 해당 예약건의 예약자와, 해당 예약건의 여행당사자를 제외한 제 3 의 인물을 말한다.)

- ③ ‘여행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 등이 여행객 또는 제 3 자의 여행경비 부정 사용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로 인해 ‘하나투어’에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하나투어’ 및 제 3 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5조 [다른 계약과의 관계]

- ① ‘하나투어’와 ‘여행사’간에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되며, 별도 합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한다.
- ② ‘여행사’는 본 계약 체결 시 제 12 조 제 1 항 5 호 따른 ‘개인정보보호특약서’를 함께 체결한다.

제 16조 [관할 법원]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나투어’와 ‘여행사’는 상호 원만한 협의로써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조 [추가 계약]

- ① ‘하나투어’와 ‘여행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을 함께 체결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서
 2. 페어프라이스 계약서

제 18조 [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대리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투어’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 방법 또는 서면계약으로 체결한다.

제 19조 [계약의 실효]

본 계약 체결 시점에 본 계약 내용과 동일/유사한 상품판매대행계약이 이미 체결 되어있다면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윤리경영 실천]

본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공정, 정직,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거래 시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거래 시 “하나투어”의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를 제의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하나투어”의 내부신고제도 채널(사이버신문고)에 제보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는 관련 자료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한다.

2022-09-07

“하나투어”

사업자등록번호: 102-81-39440

상호명: (주)하나투어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길 41

대표이사: 송미선, 육경건



“여행사”

사업자등록번호: 417-70-01307

상호명: TK트래블

주소: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3 5층(이문동, 명경빌딩)

대표이사: 강일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서

(주)하나투어와 ‘TK트래블’ (이하 ‘여행사’) 는 기본계약에 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관련 다음과 같은 특약지침에 상호 약정한다.

제 1 장 특약서 개요

제 1 조 [목적]

본 특약은 '하나투어'가 '여행사'에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보안관리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주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①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소유자를 말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자는 주체 (법인, 단체, 개인)를 말한다.
-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사업자/개인)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예: 상품판매대행계약에 기재된 예약시스템)

제 3 조 [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 ①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의 기간과 동일하다.
- ② 본 특약의 효력은 '기본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 4 조 [법률 준수]

'하나투어'와 '여행사'는 개인정보의 위탁 및 수탁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감독기관 지침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특약의 내용 및 기본적 의무사항]

- ① 개인정보처리는 '기본계약'상 위임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로 제한한다.
- ② '여행사'는 취급 및 위탁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임의의 목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 공유, 판매할 수 없다.
- ③ '여행사'는 '하나투어'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및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업무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완전파쇄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개인정보 취급부주의 등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여행사'가 책임을 지며 '하나투어'는 면책된다. 여행사가 고용한 임·직원의 귀책사유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본다.
- ⑥ '여행사'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시, 본인의 접속 계정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해당 접속권한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인 1 계정)

제 2 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제 6 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개별 여행사)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위해 내부의사결정을 통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여행사’의 인력 운영규모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의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개인정보보호조직 운영]

① ‘여행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장내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1.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여행사’의 소속 직원 또는 제 3 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고객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여행사’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고객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대표자 스스로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 가능)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 8 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① ‘여행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행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검수가 필요한 경우, ‘하나투어’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여행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자료회신에 성실히 임한다.

③ ‘하나투어’가 ‘여행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수행 시 ‘여행사’는 적극 참여한다.

제 9 조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조치]

① ‘여행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접근권한 관리/ 통제기준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1인 1계정)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컴퓨터 및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정보에 대하여 안전한 접근관리를 위하여 개별적인 ID 사용과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안전기준에 따라 영문/숫자/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2 종류 조합 시 10 자 이상, 3 종류 조합 시 8 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매 6 개월마다 변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상시 근로자 5 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여 접근통제 시스템설치 의무 예외)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퇴사일로부터 3 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 0 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비밀번호, 카드결제정보, 바이오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PC/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 시 패스워드 설정 필수 사항)

② “여행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솔루션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 1 1 조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① 업무수행 목적을 위한 필수 최소한의 용도로 고객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접속하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며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적/임의적인 고객정보 접속 및 열람은 금지해야 한다.

② 하나투어는 ‘여행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올바른 사용 확인을 위해, 접속이력 및 개인정보 수행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접속이력 및 수행이력이 확인 될 경우, 소명절차 진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 2 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 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관련업무 PC 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고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 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③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PC 의 OS 버전은 Windows7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④ 침해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여 지능형 지속 위협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 1 3 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 해야 한다.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USB 등)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1 4 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게시에 관한 사항]

- ① ‘여행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 또는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장에서 CCTV 는 원칙적으로 화재예방, 시설안전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CCTV 설치목적/촬영범위/관리책임자/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 ③ ‘하나투어’는 개별 여행사 사업장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본 특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본 특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여행사’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선해야 한다.

제 1 5 조 [비밀유지 및 고객정보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

- ① ‘여행사’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여행상품 예약 및 고객관리 업무수행 도중, 고객의 휴대폰번호 및 연락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써 법률적 처분 사항이므로 업무취급자는 반드시 유의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 ③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여행사’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여행관련 고객의 경우 해당 여행상품 서비스진행이 종료된 경우 수집목적이 소멸한 것이므로, 여권사본 / 카드증빙 등은 업무처리 후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는 것이 기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정보주체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상 허용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조치로 처리(저장 시 암호화)하며 업무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한다.

② ‘여행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③ ‘하나투어’는 필요한 경우 ‘여행사’에게 기 제공한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하나투어’는 개인정보의 파기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파기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보안점검 협조]

① ‘하나투어’는 제 4 조에서 규정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위탁사 관리·감독 의무 요건 준행을 위하여 수탁사인 ‘여행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의 점검·감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여행사’는 ‘하나투어’가 요구하는 증적 현황 자료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금지 및 이전 제한]

① ‘하나투어’가 ‘여행사’에게 제공 또는 공유한 정보는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는(삭제) ‘여행사’가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영업양도, 합병,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7 조 및 시행령 제 29 조에 따라, 고객에게 미리 개별통지(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화, 인편 등)하고 양도자의 과실 없이 개별통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30 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통지 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법인명칭, 대표자명, 연락처)

3. 정보주체자가 자기 정보의 이전을 원치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제 19 조 [정보보호감사]

① ‘여행사’는 소속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행사’는 제 1 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 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하나투어’는 ‘여행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본 특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는 협조해야 한다.

④ ‘하나투어’는 감사를 통해 ‘여행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소명절차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다.

제 2 0 조 [고충처리]

‘여행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1 조 [특약의 종료]

‘하나투어’와 ‘여행사’의 ‘기본계약’이 종료 시 ‘하나투어’가 ‘여행사’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하나투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 2 조 [손해배상]

- ① ‘여행사’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투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하나투어’가 ‘여행사’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하나투어’는 ‘여행사’에 구상할 수 있다.
- ③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본 약정서 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모든 책임을 지며, ‘하나투어’ 또는 ‘여행사’의 고객 및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원 또는 소송발생시 ‘여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하나투어’가 분쟁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 3 조 [일반사항]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양사 합의에 의한다.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대리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투어’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 방법 또는 서면계약으로 체결한다.

2022-09-07

“하나투어”

사업자등록번호: 102-81-39440

상호명: (주)하나투어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길 41

“여행사”

사업자등록번호: 417-70-01307

상호명: TK트래블

주소: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3 5층(이문동, 명경빌딩)



‘Fair Price’ 계약서

(주)하나투어와 ‘TK트래블’ (이하 ‘여행사’)는 당사자간 기 체결한 ‘하나투어 상품판매대행계약서’(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에 부속하여 하나투어가 진행하는 ‘Fair Price’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함으로써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기간

- ① 계약기간은 "원 계약"과 동일하다.
- ② ‘원 계약’의 종료, 취소, 해지 기타 여하한 실효 시, 본 계약도 동일한 사유로 실효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 계약의 위반은 "원 계약"상의 계약위반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제 2 조 역할과 의무

- ① ‘TK트래블’은 ‘하나투어’의 ‘Fair Price 정책’을 준수하며, ‘하나투어’가 ‘예약시스템’을 통해 고지한 ‘Fair Price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계약서 내용으로 함에 동의한다. 본 정책에 따라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상품을 할인판매 할 수 없으며, 할인으로 인한 다른 판매채널과의 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Fair Price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투어’ 승인 하에 권장가격에 대하여 수수료 한도 내에서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 ② ‘하나투어’는 ‘Fair Price 정책’을 만들고 ‘TK트래블’에게 고지한다. ‘Fair Price 정책’이란 어느 판매처를 통해서든지 하나투어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며, 상품에 대한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가격정찰제 정책이며, 정책의 내용은 하나투어 예약관리 사이트인 예약시스템 내 게시방법을 통해 고지되며 변경 시에도 동 사이트를 통해 고지한다.

제 3 조 페어프라이스 운영안

페어프라이스 운영안은 예약시스템 내 게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확인 및 숙지 한다.

제 4 조 패널티

- ① 본 계약 제 2 조 제 1 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나투어’는 ‘여행사’에 시정을 최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최고하여도 ‘여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투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적용 대상
 1. 계약기간 내 적발
 2. 계약기간 내 추가 적발
 3. 차액 입금(결제) 적발 및 미소명

③ 상세 패널티

구 분	페어프라이스 패널티
1회	1개월 거래 중지
2회	3개월 거래 중지
3회	판매계약 해지 및 영구 거래 중지
비고	- 명확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 패널티 적용 - 기 출발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방안 적용이 가능 할 경우, 강제 적용 - 제휴사, 자회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제5조 계약의 체결

본 계약은 대리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투어’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 방법 또는 서면 계약으로 체결한다.

2022-09-07

“하나투어”

사업자등록번호: 102-81-39440

상호명: (주)하나투어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길 41

대표이사: 송미선, 육경건



“여행사”

사업자등록번호: 417-70-01307

상호명: TK트래블

주소: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3 5층(이문동, 명경빌딩)

대표이사: 강일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강일구' (Kang Il-gu).